

1. 개정이유

기상업무 관련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자 혼동을 방지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상현상에 관한 자료제공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법」이 개정(법률 제17424호, 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신규 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기상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기관 지정 기준을 개선하고, 기상정보제공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기상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기관 지정 기준에서 실적 요건 삭제
(안 제16조)
- 나. 자료제공 절차 및 수수료 규정 삭제(안 제17조)
- 다. 일반에 공개된 기상정보의 경우 기상정보제공 신청서의 제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으로, “있고, 지정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기상 관련 교육 실적이 있”을 “있”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17조의 제목 “(기상현상의 증명 등)”을 “(기상현상의 증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또는 자료제공에 관한 수수료”를 “수수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전자적 방법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상청에서 구축·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된 기상정보의 경우에는 기상정보제공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제17조의2제2항 중 “제공하여야”를 “제공해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기상정보 신청자에게 전송하여야”를 “기상정보 신청자에게 제공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기관의 지정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기상정보제공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성명(대표자)			전화번호(팩스번호/전자우편주소)			
	주소						
신청사항	기상정보의 종류			기간			
	기상요소						
	지점(지역)						
	용도 및 제출처			자료종류 및 발급부수			

「기상법」 제3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기상정보의 제공을 신청합니다.

2000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상청장

대행하는 자()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아래 참조
------	----	--------------

수료

수수료를 기상청장에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 또는 현금으로,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비고: 수수료 금액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기상정보 제공**

신청인 기상청 또는 대행하는 자 (기상정보제공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로서 별표 1에 따른 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한 기관·단체를 기상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 ----- -----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그 설립목적에 기상 관련 교육이 포함되어 있고, 지정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기상 관련 교육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있----- -----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지정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기상 관련 교육 실적이 있는 기관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관
②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상	②----- -----

업무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계획서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③ 기상청장은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상업무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기상현상의 증명 등) ①
(생략)

②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기상
현상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으려
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기
상자료제공 신청서를 기상청장
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③ (생략)

④제3항에 따라 발급하는 기상
현상에 관한 증명서에는 증명에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
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상
현상에 관한 증명 또는 자료제
공에 관한 수수료는 기상청장이

- 제출해야 ----.

1. ~ 6. (현행과 같음)

③ -----

----- 발급해야
-----.

제17조(기상현상의 증명) ① (현
행과 같음)

<작 제>

③ (현행과 같음)

④ _____

 _____ 첨부해야 _____
 _____.

⑤ 제1항-----
-----수수료-----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며, 비영리법인이 학술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 ~ 4. (생략)

⑥ 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기상청장에게 납부하는 때에는 수입인지 또는 현금으로, 기상현상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납부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기상현상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의2(기상정보의 제공)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기상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기상정보제공
신청서를 기상청장(「기상산업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 ~ 4. (현행과 같음)

⑥-----

남부해야 -----.

제17조의2(기상정보의 제공) ①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기상청장(「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은 제1항에 따라 기상정보 신청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기상정보가 수집되면 지체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기상정보 신청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기상청장에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 또는 현금으로, 기상정보의 제공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 제출(전자적 방법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
다만,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상청에서 구축·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된 기상정보의 경우에는 기상정보제공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② -----

----- 제공해야 -----
----- 기상정보 신청자에게 제공해야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납부해야 -----.

기상청장 또는 기상정보의 제공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